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7년 4월 18일 종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월 2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 개정이유

- 열악한 재정으로 인하여 기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청사 건립을 위한 재원으로써 국·공유재산 매각대금의 조성 비율을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별도 제정·시행(2006. 1. 1)됨에 따라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II. 주요골자

- 가. 기금의 재원을 공유재산의 매각대금 30%이상에서 국·공유재산 매각수입 중 구 귀속분의 100%로 하여 청사 건립을 위한 재원을 확대함 (안 제3조제5호)
- 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사항 중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안 제7조제3호)
- 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의 결산보고서 작성을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서 80일 이내로 개정함 (안 제 11조제1항)

III. 검토의견

- 건물 노후 및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신청사 건립을 위한 10개년 계획을 수립, 2009년 착공(2012년 준공) 목표로 소요재원 마련을 위한 기금조성을 해오고 있으나, 2007년 3월말 현재 금년 일반회계 출연금 50억원 및 이자수입을 포함하여 총 적립액이 182억원으로 소요사업비 840억원의 21.6% 불과한 수준이고, 향후 물가상승 등을 감안할 때 재원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 따라서 차질 없는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금년을 포함하여 향후 2012년까지 매년 평균 118억원 이상 재원조달을 하여야 하고, 특히 2009년에 목표대로 착공을 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설계공모 전까지 최소한 공사비의 50% (420억원)이상은 확보되어야 하므로, 늦어도 2008년 말까지는 238억원을 추가 확보하여야 하나, 현재의 기금조성 여건으로는 어려운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 본 개정조례안은 이러한 사정을 감안, 기금조성 재원 중 현재 “구유재산 매각대금의 30%이상”을 기금에 적립하도록 하던 것을 “국·공유재산 매각 수입 중 구 귀속분 전부”를 적립하도록 하여 청사건립 재원을 최대한 확보 한다는 것으로, 조례개정시 향후 안정적으로 재원조성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달리 이견은 없으나, 무엇보다 사업추진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와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 현행 조례 제3조에 의하면, 기금조성 재원으로 매년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1%이상을 출연하고 보조금 및 교부금(교부세), 기금운용 수익금, 청사 임차 보증금, 구유재산 매각대금의 30%이상을 각각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03년 이후 2006년 말까지의 기금조성 내역을 보면 동 조례 규정에 따라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 바,

※ 연도별 기금조성 내역 (2003년 ~ 2006년 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합 계	13,111	2,500	4,184	3,669	2,758
일반회계 출연금	7,500	1,500	3,000	2,000	1,000
시비보조·교부금	5,014	1,000	1,000	1,514	1,500
이 자 수 입	597	-	184	155	258
청사 임차보증금	-	-	-	-	-
구유재산매각대금	-	-	-	-	-

- “일반회계 출연금”의 경우 최종예산 기준으로 2004년도를 제외하고는 법정 적립액을 출연하지 못하였고, “구유재산 매각대금”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118억원의 매각실적이 있는데도 전혀 적립을 하지 않았으며,

※ 연도별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구유재산 매각수입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일반회계 세입예산 (최종예산 기준)	7,849	1,871	1,973	2,101	1,904
구유재산매각수입	118	62.8	11.4	42.3	1.5

- 또 “기금운용 수익금”(이자수입)의 경우 구 금고(우리은행 수송동지점)에 연이율 4.23% ~ 4.49% 수준으로 1년 단위 정기예금에 예치하고 있으나,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해서는 원금이 훼손되지 않고 유동성이 유지되는 범위안에서 수익성을 고려하여 국·공채 매입을 포함, 최대한 이율이 높은 고수익 금융상품에 예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지방재정법 제77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제2항 및 제6조제1항),
 - “청사 임차보증금”의 경우도 현재까지 적립실적이 전혀 없는데, 임차보증금이란 건물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임차인이 임대인(건물주)에게 교부하는 금전으로써, 임대인의 편에서 보면 임대보증금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보증금이란 장래 발생할지 모르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교부하는 것으로 임대차관계가 종료되면 목적물의 반환과 함께 보증금도 되돌려 줘야 하므로, “청사 임차보증금”보다는 “청사 임대료” 수입으로 바꾸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기타, 기금운용심의회 심의사항에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안 제7조제3호), 기금 결산보고서 작성 기한 변경(안 제 11조제1항) 및 기금관리 공무원의 회계 관직명 변경(안 제10조) 등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 제13조제2항 및 동 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등 상위 법령에 의거 조문정비 사항으로써 특별한 사항 없습니다.

IV.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第133條 (財産 및 基金의 設置) ①地方自治團體는 行政目的의 達成을 위하여 또는 公益上 필요한 경우에는 財産을 保有하거나, 特정한 資金의 運用을 위한 基金을 設치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財産의 保有, 基金의 設置·運用에 關하여 필요한 사항은 條例로 定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정 2005. 8. 4, 시행 2006. 1. 1)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기금"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다만, 「지방공기업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을 제외한다.

제5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원칙)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자산의 안정성·유동성·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제6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기금은 세계현금(歲計現金)의 수입·지출·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의 예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13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정 2005. 12. 28, 시행 2006. 1. 1)

제4조 (기금의 수입과 지출)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위하여 기금의 종류별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분임기금운용관을 둘 수 있다.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 지방제정법

제77조 (금고의 설치)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그 밖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 현행 서울특별시종로구신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가용재원의 범위내에서 매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출연금(세입예산의 1%이상)
2. 보조금, 교부금(교부세)
3. 기금운용 수익금
4. 청사 임차보증금
5. 구유재산의 매각대금(30%이상)